

없이 모든 NGO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검토해야 한다)

이 발표는 NGO의 일반 역할에 관한 논의보다 2003년 협약 이행에 있어 그들의 역할과 관련된 이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많은 NGO는 등재 신청 및 목록과 관계없이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무형유산 NGO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미래 방향

안토니오 아란테

브라질 캄파나스주립대학 사회인류학과 교수

서문

먼저 이렇게 기조연설자로 초대받아 영광이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러 국가 동료 여러분과의 빈번한 만남으로 이제는 업무상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 긴밀한 협력자로까지 느껴진다.

우리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비단 경제,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단결이라는 측면에도 해당된다.

이 발표를 통해서 무형유산 NGO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미래 방향에 관해 속고 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먼저 시민단체의 참여로 세계 공공 부문에서 이룬 최근의 발전과 그 결과 나타난 NGO 강화에 대한 맥락을 재조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서 NGO를 협력 단체로 규정한 ICH 협약에 따라 NGO에 부여된 역할을 살펴보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몇몇 계획을 자세하게 검토해 보겠다. 마

지막으로 참여라는 의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엄청난 지리상의 거리와 문화 차이가 국가를 구분 짓는다. 바로 이곳 회의장에서도 언어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는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법률·행정 구조와 문화 제도 속에 내재된 다양한 전문 성격의 경험으로 인해 더욱 커진다. ICH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와 함께 펼치는 활동을 생각해 보면 그 격차는 점점 메우기 어렵고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천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성과의 직면은 알찬 결실이 될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른 여러 민족의 민족지 연구와 그 연구 결과로 인류학 분야에 수용된 중요한 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반영한 여러 경험으로 공동 유산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 일조하는 다양성과 그 기여를 염두에 두었다.

현대 공공 부문에서의 NGO

공공정책 입안과 이행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전제 조건은 국가·국제·다자간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사회 책임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에 전념하는 기관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적어도 이 포럼에서 주 대상이 되는 유형의 NGO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사회 여러 계층의 인권과 시민권 보장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들 조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NGO는 통상 민족·단체·사회 부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가치 및 생활 양식의 존중을 강화하면서 완전한 시민권을 보장받도록 돕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인력과 물자 자원의 연계에 필요한 기술, 전념할 수 있는 개인들의 자발에 따른 노력으로 설립된다.

지역 행위 주체의 윤리의지(ethical commitment)는 필자가 고유하다고 간주하는 지식 및 경험 형태에 촉매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유형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실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포기하지 않으며, 이런 실상에 대한 상투성 해명에 의지해 만족하거나 그런 실상을 보수 학계 패러다임의 어투로 해석해 안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부 저자가 '응용(applied)'이라는 이름으로 자격을 부여한 유형의 지식은 의심할 여지없이 기술·학계 매개 변수로 구성되지만 실제로

는 명확하고 때로는 시급한 문제를 다룰 때 개입되는 유동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활성화된다.

여기서는 정치·사회 진행 과정과 긴밀하게 발전해야 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지역 행위 주체는 주도하는 형식으로 개입하여 주변 현실에 대응할 전략에 힘을 실어 줍니다. 이런 자발성 전념이야말로 해당 유형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것들과 차별화하는 기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NGO가 인구 전체와 공조하는 사회단체의 대변인은 아니며, 대변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NGO는 사회단체들과의 협력으로 공공 부문과 시장 경제에 가능한 한 직접 접근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많은 기관¹과 기관 내외부의 개인들이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과 높게, 무엇보다 독자 형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 파트너십, 지식 협업,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상당한 자원을 제3부문 기관으로 공식 이전할 수 있게 한 법·행정 등 제도 체계의 중요한 변화가 없었다면 그 성과는 미미했을 것이다.

NGO는 1980년대² 이후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형성됐다. 피셔(Fisher)(1997, Tatal, 2004:10 재인용)에 따르면 19세기 근대국가의 형성과 견줄 만큼 의미가 있는 과정이었다. 다소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 걸쳐 현대인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엔과 같은 다자간 기구들이 이미 1990년대 초에 사회 환경 개발 프로그램에서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NGO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의제21(Agenda 21)³ 제27.1조는 NGO가 “참여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정치 맥락에서 조직의 독립성은 참여 민주주의가 옹호하는 활동에서 “실제 참여의 전제 조건”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980년대 브라질 역시 이러한 과정의 시작을 목격했다. 20년 동안 집권해 온 군사 독재는 마침내 종식되었고, 1988년에 마침내 새 헌법이 공포되었다. 시민사회 조직은 더욱 굳건해졌고, 수많은 NGO가 새로운 환경에서 번창했다. NGO 대부분은 다양한 계층, 특히 토착 원주민과 아프리카 후손 및 노동자 계층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1 여기서 기관은 브라질에서 실시된 조사에 포함된 수많은 조직 가운데 아르테솔(ArteSol)과 이에페(Iepé)와 같은 조직을 말한다. 해당 조사의 결과는 '브라질 전통지식과 문화 표현의 기록 및 확산(Documenting and disseminat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cultural expressions in Brazil)'(WIPO, 2009)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2 예를 들어 바스마 빈트 탈랄(2004:10)은 “이러한 경향은 미국 의회가 NGO를 통한 개발 지원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킨 1981년에 시작되었다. 그 결과 미국 소재 NGO는 재정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다른 중요한 사실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들이 제공한 전체 원조에서 국제 NGO를 통해 지급되는 비율이 1970년대 10% 미만에서 1985년에 25%로 증가했다”는 것이다.(Van der Heijden 1987; Talal op.cit. 재인용)

3 의제21(Agenda 21)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됐다.

싸우는 것을 주목표로 내세웠다.

1999년에 제3부문법(Law of the Third Sector)이라는 제도가 마련되고,⁴ 그 결과 OSCIPs로 지정된 NGO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수행하기 위해 국가와 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식 허용되었다.

무형유산 보호 협약에서 NGO의 참여

필자가 초안 작성자로 참여할 기회로 ICH 협약을 이행하는 영광을 누리던 동안 NGO 참여는 합의의 요점이었으며, 실제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해당 내용은 다자간 협약인 ICH 협약 9조인 '자문 기구의 인가'에 포함되었고, ICH 협약 이행에 관한 '운영지침 III. 2장'에서 더욱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운영지침은 자문 기구의 인가 기준과 정부간위원회가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의 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체계가 실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었는가? ICH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시의적절하게 주최한 이번 회의의 의제는 이런 평범한 질문을 수많은 관련 주제로 확장시켰습니다. 추후 세션에서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으로 두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회 관습으로서의 네트워킹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 관습으로서의 네트워킹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156개 NGO가 유네스코 인가를 받아 ICH 협약 정부간위원회에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71개(약 45%) NGO가 아·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NGO가 축적한 역사와 경험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 가운데 특히 공동체와 단체 및 ICH 보유자로 확인된 개인에 대한 NGO의 윤리 의지라는 측면에서 반향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NGO의 목적, 작업 방식, 목표 집단의 개요, 이용 가능한 인력·재정

4 브라질 연방공화국, 연방법 9.790, 1999년 3년 23일 공포.

자원,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치 상황 등 NGO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들 요소를 단순히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만남에서 어려운 의사소통의 원인에 관한 단서와 어쩌면 이 네트워크가 상호간에 취약한 연결성을 나타내는 원인을 알려줄 수 있다. ICH 협약 사무국의 중요하고 감탄할 만한 계획안임에도 필자를 포함한 참석자 대부분이 NGO포럼⁵(neoforum.pbworks.com)과 의사소통 플랫폼(www.ichngoforum.or) 도입 과정에서 여러 국가의 동료들과 함께 ICG의 인가를 받은 다른 기관과의 전문성 관계를 지속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다소 좌절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관점에서 프랑스 세계문화의집(Maison des Cultures du Monde)과 일본 IRCI(무형유산국제연구센터)의 후원으로 파리(2012년)와 도쿄(2013년)에서⁶ 개최된 연구자 포럼(Researchers Forum)을 예로 들 수 있다. 실제로 ICH 보호 강화에 헌신하는 NGO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아주 활발한 지역의 하나인 아·태 지역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중국의 CRIHAP(무형유산국제훈련센터)와 이번 회의 주최 기관인 한국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발전시킨 주요 활동들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활동들과 필자 개인이 정통하지 못한 기타 계획안 모두 ICH 협약에 따라 NGO 참여 공간을 조직하는데 중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인정과 감사를 받아 마땅하다. 협회의 프로젝트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기술, 정치 자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상 접하게 되는 NGO 상호간의 다양성과 차이는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해 서로에게 소원하게 만든다.

따라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즉 협력하고 응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NGO 간의 접촉과 비정규 교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진된 정보 교류와 단기·중기·장기 목표 공유를 위한 협력에 의해 육성된 네트워킹의 실행 주도를 도모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 아트연맹(아르테솔, ArteSol)의 행적으로 알 수 있듯 개인 간의 대면 또는 가상의 상호작용과 지속된 특정 프로젝트의 실현을 통해서만 이를 달성할 수 있다.

아르테솔(www.artesol.org.br/site/)은 1998년에 설립된 사회적 NGO로, 인간개발지

5 NGO 포럼은 2010년 이후 정부간위원회 회의의 전야에 개최되고 있다. 해당 포럼에서 채택된 선언문은 www.ichngoforum.org/documents-2/에서 참조.

6 1차 무형유산 연구자 포럼: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의 이행. 최종 보고서. 오사카: IRCI, 2012(ISBN 978-4-9906647-0-1)와 2013 무형유산에 대한 IRCI 회의-유네스코 ICH 협약의 두 목록에 대한 등재 기준 평가. 오사카: IRCH, 2013(ISBN 978-4-9906647-1-8)

수가 낮은 '브라질 지역의 공예전통 보호와 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르테솔은 다양한 협력 단체의 지원을 받아 브라질의 26개 주 가운데 17개 주에서 100여 개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약 5,000명의 장인과 그들의 가족이 혜택을 받았다. 그들은 주로 도자기, 직물, 레이스 및 자수 공예품, 목재 및 점토 조각, 악기 및 장난감 등 공예품 생산자로서 여성이 대부분이다.

아르테솔은 연행자와 지식 보유자가 나타내는 역사·세계관·사회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무형유산 전반, 즉 공예품을 특별히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 문화 공동체 구성원은 대부분 성·연령 및 다른 형태의 사회 분화로 인한 차이를 고려하고 이들 자원이 전체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사실 실연과 전승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ICH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가족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서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르테솔⁷이 개발한 사회 기술은 위협에 처한 브라질 무형문화유산 표현⁸의 보호에 효과가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세 종목은 아르테솔의 조치 이후 브라질의 공식 문화유산 일부로 자리하게 되었다.⁹

2002년에 OSCIP 형태로 전환한 아르테솔은 파트너십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발전시켰다. 공예 협회들의 협력 기관이자 기술, 때로는 물질 자원의 제공자로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전통 기술 보호를 강화시키는 틈새시장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최근에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동체와 함께 꾸준히 실현하고 있지만 2012년 이후 아르테솔의 주목표는 아르테솔 네트워크(www.artesol.org.br/rede) 구축이다. 이 주제는 오늘 회의의 목표와 직접 관련된다.

아르테솔 네트워크는 특정 웹사이트를 통해 협회, 협동조합, 대가, 장인을 포함해 브라질 전통 공예품의 생산 사슬에 속하는 상업 협력 단체인 중개상들 사이의 직접

7 아르테솔은 빈곤한 생활을 하는 전통 공예품 생산자 단체를 파악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한편 공예품 생산 활동이 이들의 사회생활과 가계의 일부를 어떻게 차지하고 연행자와 일반 국민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했다. 아르테솔은 전통 기술의 복원, 강화, 발전 등 전통 기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했다. 이 단계의 주요 목적은 공동체의 자아인식 형성 보조, 전통 기법 강화 및 촉진, 협회 설립 지원, 전통 기호와 기법 존중 등을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공예품의 재도안을 위한 협력과 가격 형성 및 가능한 한 시장과의 직접 관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아르테솔이 도입한 사회 기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르테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보호 방안의 중요한 사례로는 세르지피 주 디비나파스토라의 아일랜드 레이스, 마투그로수두술 주 코롬바와 라다리우의 현악기 비올라데코슈(viola de cocho), 이스피리투산투 주 고이아베이라스의 토기 조리판 제작법이 있다. 이것들은 2000년 이후 아르테솔의 관심 대상이었으며, 현재 브라질 문화유산의 일부로 포함된 IPHAN 공식 보호 문화 종목이다.

9 아르테솔 사이트에서 미나스제라이스 주 폴루베레다스(Polo Veredas)의 사례를 참조한다.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1998년 이후 아르테솔이 개발한 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다. 주요 목표는 공예품 판매에서 장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 무역 원칙을 기준으로 공예품 판매 방식에 조언하는 것이다.

아르테솔 네트워크는 광범위한 정보와 접촉을 가능케 하는 의사소통 계획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상점, 지원 단체 및 정부 프로그램을 포괄할 계획이다. 네트워크는 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라 브라질의 전통 공예 발전에 효과가 있는 네트워킹 도구로의 수립이 목표다. 아르테솔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이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서 연결된 참여자 각자에게 이익이 거의 없는 네트워크와는 반대로 앞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 단체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장려하는 공간을 언급했을 때 정확히 무엇을 언급했는지 아르테솔 사례가 설명해 주고 있다.

목록에서 한 발 나아가

논의를 위한 두 번째 주제는 ICH 보호에서 NGO 참여에 내재된 중요성이다. ICH 협약은 고립된 문화유산 종목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호 계획의 실행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또는 긴급보호목록에 문화유산 종목을 포함시키는 것 이상의 광범위하고 심오한 요구 사항을 담고 있거나 적어도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목록에 대한 등재야말로 모든 문화유산 종목이 협약에서 수립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 단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등재 제도의 주요 목적은 인류 집단 모두의 창조성과 문화 다양성에 가장 중대한 공헌을 아우르는 현실이라는 점과 모든 민족의 문화라는 광의의 범주에서 ICH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ICH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목록의 명칭에 포함된 '대표(representative)'라는 용어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있음에도 대표목록과 긴급목록에 등재된 문화유산 종목은 문제점과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ICH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와 내재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이 나의 견해다.

문화유산이라는 주제에 대해 광범위한 이해의 입장을 취하는 협약은 각 당사국에 '자국 영역에 존재하는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한다(제11.a조). 이는 해당 유산이 등재된 문화유산 종목인지 여부와 무관하며, 국가 인벤토리 작성이 국가 차원의 보호 도구로 명확히 언급되는 한 고립된 종

목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ICH 협약 제3장은 중요한 근본 문제에 대한 숙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립된 문화유산 종목의 보호가 조치를 전폭 끌어내는 촉매제로 작용하여 더욱 광범위한 사회·문화 발전 과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맥락의 재구성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인벤토리가 이와 같이 조직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호 연관된 일련의 종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¹⁰

따라서 정부간위원회 자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발전을 이루었고, 상당한 도덕성 부채를 안고 공동체들과 지역 차원에서 협력함으로써 창조성 에너지는 물론 물질·지식 자원을 응용하고 배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한다.

맺음말

협약은 문화 정책이라는 맥락에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혁신 수단이지만 협약이 단순히 NGO를 자문기관으로서 협약 활동에 참여시켰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해당 역할은 실제로 NGO 전체를 총괄하는 내용을 다룬 문서인 유네스코 현장(제11조)에 수립되어 있으며, 이는 제2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¹¹

문화 보전 분야에서 혁신이자 가치 혁명이라고 일컬을 만한 협약의 기여는 제2.1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 ICH를 주체가 있는 대상으로 맨 처음 인정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제2.1조는 ICH가 '공동체와 단체,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정하는 사회 관습으로 구성된다'고 언급한다. 또한 제11.b조에서와 같이 보호 대상을 파악하고 보호 방안을 수립하는 업무에서 이들 주체에 대한 협력 단체로 NGO를 규정하는 것 역시 획기할 만한 것이었다. 해당 내용의 포함은 NGO 또는 적어도 '관련'이 있다고 지정된 조직이 ICH 보유자와 생산성과 기술 능력을 갖추고 윤리 지침을 준수하는 대화 및 협력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묵시로 인정한다.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 보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인정이 노력의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싶다. IGC 자문가로서의 활동과 해당 분야에서 주최한 다양한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와의 협력 작업 경험은 교훈을 제공하는 한편 고려할 만한 주요 이슈와 함께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향후 공동 조치의 전망을 제시한다.

문화유산 분야에서 ICH 보유자와 함께 펼치는 조치에서 NGO들의 수평 간 협력은 물론 지역 및 협약의 관리 주체¹²와의 협력 차원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제기된다. 어쩌면 해당 문제에 대한 비판과 독립되고 객관화된 토론은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NGO를 장려할 수 있다. 센터가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촉구하고, 더 나아가 후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우리가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자세한 프로젝트로 지식 교류와 협력이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인식 능력, 자율성 및 비판 적용과 더불어 협약의 관리 주체를 비롯해 ICH 보유자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접근 과정 및 유효한 협력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이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

10 이 문제는 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다룬다. KONO, t. (ed)에서, 무형문화유산과 지식 재산: 공동체, 문화 다양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안트베르프(Antwerp): Intersentia 출판사, 2009. p. 51-76. ISBN 978-90-5095-758-8.

11 비정부 기구와 유네스코 파트너십에 관한 지침(Directives concerning UNESCO's partnership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제28차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31차, 34차, 36차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1/002161/216192c.pdf#page=15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사례로 ICG가 채택한 운영지침(Operational Directives)에 포함된 목록 등재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독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IRCI가 조직한 주제회의를 참고한다(IRCI, 2013).